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944
----------	-----

제안년월일 : 2023년 6월 21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이은림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77호), 최재란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31호)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2023.6.21.)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이은림 의원 외 10명, 최재란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등학교 통학로가 협소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용지 일부를 활용하여 어린이 통학로를 설치 및 관리하는 것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함

-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에 대한 용어를 통일하고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와 한쪽 방향 도로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 필요시 반대편 도로까지 보호구역 지정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토록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인 바,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함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학교용지’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8호)
- 나.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사항에 학교용지를 활용한 설치·관리의 지원을 신설함(안 제6조제2항제4호)
- 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제2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 라. 시장이 서울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6제1항)
- 마.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가 이어지는 반대편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도로의 양방향 모두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의6제2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학교용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0호에 따른 학교용지를 말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교용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관리 지원

제6조의2제2항 중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하 “서울경찰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6(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서울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우선적으로 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가 이어지는 반대편 도로에 대해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해당 도로의 양방향 모두에 제1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교통위원회 대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7. (생략)</p> <p><신설></p> <p>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신설></p> <p>4. (생략)</p> <p>제6조의2(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보행자 우</p>	<p>제2조(정의)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학교용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0호에 따른 학교용지를 말한다.</p> <p>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학교용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관리 지원</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6조의2(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서울 특별시경찰청장(이하 “서울경찰청장”이라 한다) ----- -----</p>

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
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
제)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
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
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
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특
별시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인 협의
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생략)

②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된 시설의 주(主) 출입문과 직접 연
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지방경찰청장
과 협의하여 정차나 주차를 금지 시
킬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
제) -----

----- 서울경찰청
장 -----

-----.

제7조의2(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서울경찰청장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6(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
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서
울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

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우선적으로 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가 이어지는 반대편 도로에 대해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해당 도로의 양방향 모두에 제1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